#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71

발의연월일 : 2025. 2. 28.

발 의 자: 박정하·최수진·신성범

배준영 • 엄태영 • 김재섭

박덕흠 • 한지아 • 김상훈

최보윤 · 서일준 · 박정훈

이종욱 • 조은희 • 박수민

진종오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마트폰 보급의 확대,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,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.

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,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,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.

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,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·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.

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(안제18조의4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중독예방	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중독예방
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	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에
	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
	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이
	<u>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</u>
	<u>박중독예방교육을</u> 실시하여야
	한다.